

[별첨 2]

III. 업무배상공제약관(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의 회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의 각종 민원업무 및 제증명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거나 형사방어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공제등록증권 :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단체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내지 시, 군, 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
4. 배상책임 :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5. 보상한도액 : 공제회와 회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2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일임 받은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라 합니다)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6.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7. 보험금 분담 : 업무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가입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8. 대위권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9. 손해배상청구 : 피공제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중재, 조정 또는

화해 등의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중지, 유지 또는 이행 등의 명령, 처분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0.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금 및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말합니다. 단, 세금, 벌금,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배상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방어비용 : 피공제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합니다.

12.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13.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나.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14. 1회의 공제사고 :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형사절차를 포함)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나. 피공제자가 형사절차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1심, 항소심, 상고심 전체를 1회의 사고로 하며, 하나의 사건으로 다수의 피공제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를 1회의 사고로 합니다)

15. 형사방어비용 : 형사사건에 대하여 헌법과 관련법령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16. 형사절차 :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시작되는 수사 및 공소 절차를 포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7. 연단위 복리 : 보험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18.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9. 공제기간 :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0. 영업일 :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등록의 성립과 유지

제3조(공제등록) 공제등록은 공제회 회원이 별첨2-2에 기재된 업무에 대해 별지 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제등록신청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4조(약관의 제공)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조(등록의 무효)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등록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제31조(등록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5조(등록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7조(등록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을 문서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등록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회원명, 피공제자
2. 보상한도액, 공제회비 등 기타 공제등록의 내용

② 공제회는 회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17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조사) ① 보험사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는 공제등록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보험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등록) ① 회원은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공제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이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2조(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에 정한 보고연장보장기간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드립니다.

1. 공제회비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등록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으로 이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장일자로 하는 등록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공제등록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11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공제회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18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보고연장보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 또는 개시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절차는 공제기간 만료일에 제기 또는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공제기간 만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절차에 한합니다. 보고연장보장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 ①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로부터 2년간
2.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로부터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 이후 제1호의 기간 동안에 보험사에 통지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거나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제19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 1항의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업무의 분담) ① 공제회는 업무배상공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제사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손해보험사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사고에 관련된 소송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제14조(공제회비 효율) 손해배상공제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배상공제 회비효율서는 별첨2-1과 같습니다.

제3관 등록의 해지 및 공제회비의 환급 등

제15조(등록의 해지) ① 회원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등록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배상공제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31조(등록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2조(등록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등록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등록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공제회비를 받은 때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⑤ 제3항에 의한 등록의 해지가 손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보험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등록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등록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등록한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17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공제회비의 환급) ① 이 공제등록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회비를 돌려드립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회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공제회가 제34조(사기에 의한 등록), 제15조(등록의 해지) 또는 제1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등록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18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공제등록 증권에 기재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제2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제2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제2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절차 등에 의해 피의자(범죄인)

이전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의 참고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아래 비용을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2. 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③ <삭제 2023. 12. 27.>

- ④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원인 또는 행위로 기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공무원을 포함합니다)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신체장해, 정신적 고통,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 등의 명예훼손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인격 침해
4. 피공제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책임으로 인한 손해
6.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7. 공제기간 개시일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
8. 공제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주장되었던 행위
9.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12.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의 불완전 가동 및 제3자의 침투행위로 기인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아래 각 호의 죄 및 그와 유사한 죄(특별법을 포함합니다)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
3. 형법 제2편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4. 형법 제2편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5. 형법 제2편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6. 형법 제2편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7. 형법 제2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140조의2, 제142조 및 제144조의 범죄. 이 경우 제140조의2 및 제142조의 범죄는 미수범을 포함합니다.
8. 형법 제2편 제9장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중 제145조 및 제146조의 범죄. 이 경우 미수범을 포함합니다.
9. 형법 제2편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중 제154조의 범죄
10. 형법 제2편 제11장 무고의 죄
11. 형법 제2편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2. 형법 제2편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 및 제175조의 범죄
13. 형법 제2편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4. 형법 제2편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5. 형법 제2편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6. 형법 제2편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7. 형법 제2편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8.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품속에 관한 죄
19. 형법 제2편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0.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21. 형법 제2편 제27장 낙태의 죄
22.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제2항·제4항, 제272조, 제273조 제2항 및 제274조의 범죄. 이 경우 제271조제2항·제4항, 제273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도 포함합니다.
23.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5.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3조, 제325조 및 제327조의 범죄. 이 경우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포함합니다.

26.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7.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28. 형법 제2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29. 형법 제2편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범죄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범죄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유죄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할 때 그 일부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할 때 그 일부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죄수(罪數) 대비 면책되지 않는 죄수(罪數)의 비율에 보상한도액을 곱한 만큼을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20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나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자의 성명 및 그의 주장, 피공제자가 최초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지한 상황 및 그 원인

2.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사고 또는 상황을 알았을 경우 그 사고 또는 상황의 내용, 발생일, 관계인 또는 피해자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3.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1조(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절차 개시일자) ①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와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 ②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라 함은 피공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입증절차가 없는 한 피공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험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2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사는 제2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영업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4.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형사방어비용 등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공제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 한도로 합니다. 이때에 제20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합니다.

제24조의2(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① 보험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18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2호다목 및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제자는 보험사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2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6조(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26조(보험금의 분담) ① 업무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가입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공제등록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7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법률상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8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본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9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30조(대위권) 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관 회원의 등록 전 알릴 의무 등

제31조(등록 전 알릴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 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등록 후 알릴 의무) ① 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업무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사기에 의한 등록)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공제등록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기록의 완비)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직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관할법원) 본 공제등록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회 및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회원이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 보험사는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첨2-2]

업무배상공제 등록대상 민원업무 목록

직위별	관련부서(예)	세부업무 또는 발급서류명
통합민원	종합민원실	각종 민원서류 통합발급
인감	종합민원처리과 민원봉사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총무과	인감증명, 외국인인감증명
주민등록	종합민원처리과 민원봉사와 민원허가과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전입·말소, 팩스민원, 어디서나민원처리
가족관계	민원봉사와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초본, 출생·사망신고
지적	지적과, 시민과 민원지적과 도시과, 재무과	토지(임야)대장 등본, 지적(임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 이용(도시)계획확인원, 수치지적부등본, 지적삼각점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지적측량성과도검사, 부동산거래검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
건축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주택과	건축물관리대장작성·발급
세무	세무과, 세정과 지방세과	지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차량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자동차저당권설정·말소, 이륜차등록
여권	여권과 자치행정과	여권, 여행자증명
농축 수산	농림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물과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경증명, 어선원부등본, 어업권등록원부, 가축시설증명, 가축사육증명
경제	지역경제과	공장등록증명
사회복지	사회복지과	모·부자가정증명, 장애인증명, 의료보호대상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LPG할인카드
보건	보건소 위생과	건강진단수첩, 장애인진단서, 운전면허적성검사서, 중기적성검사서, 채용 신체검사서, 식품업소휴·폐업확인서, 사체검안서, 건강진단결과서(의료 행위업무 제외), 약국및의료기관휴·폐·재개업확인서
장례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증명서
외국인	주민자치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공사	회계과	공사실적증명
소방	소방서	화재증명원,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

※ 각종 인·허가 및 재무·회계·세금징수업무는 서류발급업무에 한함

공제등록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업무배상공제 등록신청서

회 원 명	
-------	--

소속 및 담당자		연 락 처	
소 재 지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등록업무

등록업무명	주 업 무 명	겸직업무명
	☐ 인감발급업무 : 명	☐ 주민등록업무 : 명
	☐ 주민등록업무 : 명	☐ 가족관계등록 : 명
	☐ 통합민원업무 : 명	
	☐ 가족관계등록 : 명	
	☐ 차량등록업무 : 명	
	■ 총 인 원 : 명	

□ 보상한도

보상한도	업 무 명	1청구당 한도액	연간 총보상한도액
	인감발급업무	억원	억원
	주민등록업무	억원	억원
	통합민원업무	억원	억원
	가족관계등록	억원	억원
	차량등록업무	억원	억원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1호 서식>

등 록 인 원 현 황

(회원명 :)

소속(읍면동)	업 무 명	인원수	겸직업무명	인원수
계				

<별지 제2호 서식>

업무배상 사고접수양식

회 원 명			
가 입 업 무 명		계 약 번 호	
사 고 일 시	년 월 일	사 고 시 각	
사 고 장 소			
사 고 경 위			
자치단체 사고처리 업 무 담 당 자	소속 부서 및 성명 : 전화 : 팩스 :		
피 해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연락처 :		
피 해 사 항	1. 피해 상태 2. 피해추산액		
기 타			

[별첨 3]

Ⅳ.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통약관(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의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제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거나 형사방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공제등록증권 :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단체 등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합니다)
 -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 가.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 특정직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4의2. 보건의료직 공무원 : 「공무원 임용령」 별표1 과학기술직군 중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으로 정의되는 사람 또는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의3. 소방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감독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의4.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피공제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중재, 조정 또는 화해 등의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중지, 유지 또는 이행 등의 명령, 처분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라 함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금 및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말합니다. 단, 세금, 벌금,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배상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7. 「방어비용」이라 함은 피공제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합니다.

8.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나.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9. 「담보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국가

나.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0. 1회의 공제사고 :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형사절차를 포함)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나. 피공제자가 형사절차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1심, 항소심,

사고심 전체를 1회의 사고로 하며, 하나의 사건으로 다수의 피공제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를 1회의 사고로 합니다)

11. 「의료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의료행위(보건의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수단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잘 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진자를 말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12.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수단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 치료등의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13. 배상책임 :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14. 보상한도액 : 공제회와 회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15.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16. 보험금 분담 :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가입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17. 대위권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18. <삭제 2023. 12. 27.>
19. 형사방어비용 : 형사사건에 대하여 헌법과 관련법령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20. 형사절차 :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시작되는 수사 및 공소 절차를 포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1. 연단위 복리 : 보험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2.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3. 공제기간 :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4. 영업일 :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등록의 성립과 유지

제3조(공제등록) 공제등록은 공제회 회원이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공제등록신청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4조(약관의 제공)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조(등록의 무효)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등록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제33조(등록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6조(등록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7조(등록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내용은 문서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등록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회원명, 피공제자
2. 보상한도액, 공제회비 등 기타 등록의 내용

② 공제회는 회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18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조사) ① 보험사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는 공제등록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간 중 또는 보험사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등록) ① 회원은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공제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이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2조(자동보고연장 보장기간)에 정한 보고연장보장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 공제회비를 납입하면 제13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1. 공제회비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등록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장일자로 하는 등록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등록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11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공제회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19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보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 또는 개시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절차는 공제기간 만료일에 제기 또는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공제기간 만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보고연장보장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 ①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로부터 2년간
2.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로부터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 이후 제1호 기간 동안에 보험사에 통지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거나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제19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또는 공제등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 1항의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

장보장기간은 이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공제회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제회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공제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 공제회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공제회비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회비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업무의 분담) ① 공제회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제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손해보험사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사고에 관련된 소송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제15조(공제회비 요율) 손해배상공제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회비 요율서는 별첨 3-1과 같습니다.

제3관 등록의 해지 및 공제회비의 환급 등

제16조(등록의 해지) ① 회원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등록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33조(등록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4조(등록 후 알릴 의무)에 정한 등록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등록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공제회비를 받은 때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⑤ 제3항에 의한 등록의 해지가 손해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공제회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등록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등록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등록한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18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공제회비의 환급) ① 이 공제등록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회비를 돌려드립니다.

-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회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공제회가 제36조(사기에 의한 등록), 제16조(등록의 해지) 또는 제1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등록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19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제29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제29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제3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 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형사절차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아래 비용을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2. 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3. 형사합의금

③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절차가 모두 발생한 경우 둘 중 먼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공제기간 내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절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며, 공제등록증권상에 소급보장 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따로 정하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1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나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자의 성명 및 그의 주장, 피공제자가 최초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지한 상황 및 그 원인

2.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단,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알았을 경우 그 상황 또는 원인의 내용 및 발생일, 관계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이 경우에 공제회에 알린 상세한 내용을 기초로 피공제자에 대해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보험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2조(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절차 개시일자) ① 제19조(보상하는 손해)제3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와 공제회 및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 ②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라 함은 피공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피공제자가 수사기관으로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3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험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2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보험사는 제2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영업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또한 공제등록증권에 보상비율이 기재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보상비율 곱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2.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4.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형사방어비용 등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의 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에 제21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합니다.
- ③ 보험사는 제2항의 총 보상한도액을 적용할 때에 아래의 경우를 불문합니다.

1. 피공제자의 수
 2. 손해배상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 ④ <삭제 2023. 12. 27.>

제26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보험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제자는 보험사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보험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8조(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금의 분담) ①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가입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본 공제등록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본 공제등록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9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법률상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9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3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본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1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32조(대위권) 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관 회원의 등록 전 알릴 의무 등

제33조(등록 전 알릴 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34조(등록 후 알릴 의무) ① 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 하거나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제회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양도) 공제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사기에 의한 등록)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등록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기록의 완비)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관할법원) 본 공제등록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회 및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회원이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본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 보험사는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